

#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의회

#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163 |
|----------|------|

제안연월일 : 2014. 5. 2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제7대 의회부터는 교육의원제도의 일몰로 교육의원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고,
- 나.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과 그동안 회의 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체계적인 절차에 의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총선거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의 집회일과 의사일정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3조)
- 나.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의 범위에 대안을 포함하였고, 수정동의 발의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조문 및 자구를 정비함(안 제24조, 제26조)
- 다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과 관련된 교육위원회 자체의결 안건을 교육위원장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함(안 제32조)
- 라. 시정질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, 시정질문 기간 중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당일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(안 제73조의2, 제73조의3)

마.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,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원별 회의출석률과 의안발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함(안 제88조의4)

바. 개정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(부칙)

### 3. 참고사항

가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(6쪽)

나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: 별첨(11쪽)

다. 비용추계서 : 미첨부(규칙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)

##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“(의석배정)”을 “(의석배정 및 최초 임시회)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하되, 집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- ④ 사무처장은 최초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당선자에게 집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전반기 의장이 선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한 때에는 의원 당선자에게 그 이유와 변경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위원회 제안 의안의 처리)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(대안을 포함한다)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(수정동의) 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(예산안과 기금운용

계획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)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동의가 발의되는 경우 의원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찬성할 수 있으며, 그 외의 수정동의 발의에 중복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(대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제출할 수 없으며,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자 없이 바로 의제가 된다.

④ 의안에 대한 의원발의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(토론종결 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⑤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한다.

**제32조** 단서를 삭제한다.

**제73조의2**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위원장에게 제출하고, 위원장은 소속 위원의 질문일별 질문순서와 질문요지서를 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의장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늦어도 시정 질문 시간 48시간 전(휴무·공휴일은 제외한다)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

⑧ 위원회별 질문순서는 「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5조의 위원회 순서에 따르며, 시정질문일마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. 이 경우 대별 최초의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.

제73조의3제1항 중 “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한하여 늦어도 답변시간”을 “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 그리고 시정질문기간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는 늦어도 답변시작”으로 한다.

제8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8조의4(의정활동상황의 공개) 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,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간 회기운영계획,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
2.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보고서
3. 행정사무감사·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
4. 의안(청원을 포함한다)의 접수 및 처리 현황
5. 의원별 회의출석률, 의안발의, 시정질문 현황
6.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

#### 부칙

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      행   | 개       정       안  |
|---|--|
| <p>제3조(의석배정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&lt;신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&lt;신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&lt;신설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color: blue;">&lt;신설&gt;</p> | <p>제3조(의석배정 <b>및 최초 임시회</b>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법 제45조에 따라 사무처장이 소집하되, 집회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원의 임기 개시일로 한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u></p> <p>④ <u>사무처장은 최초 임시회 의사 일정 운영계획안을 작성하여 의원 당선자에게 집회일 7일 전까지 통지한다.</u></p> <p>⑤ <u>제4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장이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전반기 의장이 선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⑥ <u>제5항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한 때에는 의원 당선자에게 그 이유와 변경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</u></p> |

| 현행  | 개정안   |
|---|---|
| <p>제24조(위원회의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   | <p>제24조(위원회 제안 의안의 처리)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(대안을 포함한다)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</p>   |
| <p>제26조(수정동의)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없이 의제가 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.</p> | <p>제26조(수정동의) ①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에 대한 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이상(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)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동의가 발의되는 경우 의원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찬성할 수 있으며, 그 외의 수정동의 발의에 중복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의안에 대하여는 수정안(대안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제출할 수 없으며,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자 없이 바로 의제가 된다.</p> |



| 현행   | 개정안   |
|--|---|
| <p>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<u>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</u>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</p> <p>제32조(의안의 이송)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. 다만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송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73조의2(시정질문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<u>의장에게 제출하여야</u> 하며, 의장은 늦어도 시정 질문 시간 48시간 전(휴무·공휴일은 제외한다)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 | <p>④ 의안에 대한 <u>의원발의</u> 대안은 위원회에서 <u>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(토론종결 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까지</u>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.</p> <p>⑤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<u>의원의 수정동의는 그 원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</u> 당해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의한다.</p> <p>제32조(의안의 이송)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단서 삭제&gt;</u></p> <p>제73조의2(시정질문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<u>소속 위원장에게 제출하고</u>, 위원장은 소속 위원의 질문일별 질문순서와 질문요지서를 의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|

| 현행  | 개정안  |
|---|--|
|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73조의3(답변 및 추진상황 보고 등)</p> <p>① 시장과 교육감은 <u>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한하여 늦어도 답변시간 3시간 전까지</u> 의장에게 답변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, 의장은 이를 답변이 시작되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| <p>⑦ 의장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늦어도 시정 질문 시간 48시간 전(휴무·공휴일은 제외한다)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⑧ 위원회별 질문순서는 「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5조의 위원회 순서에 따르며, 시정질문일마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. 이 경우 대별 최초의 순서는 의장이 정한다.</p> <p>제73조의3(답변 및 추진상황 보고 등)</p> <p>① ----- <u>일괄답변이나 구두답변 그리고 시정질문기간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질문에 대하여는 늦어도 답변시작</u>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|

| 현행 | 개정안  |
|----|--|
|    | <p data-bbox="815 282 1428 327"><u>제88조의4(의정활동상황의 공개)</u></p> <p data-bbox="858 353 1428 544">① 의장과 위원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.</p> <p data-bbox="858 577 1428 835">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되,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data-bbox="874 875 1428 1749"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data-bbox="874 875 1428 992">1. 연간 회기운영계획,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</li> <li data-bbox="874 1025 1428 1142">2.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전심사보고서</li> <li data-bbox="874 1176 1428 1292">3. 행정사무감사·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</li> <li data-bbox="874 1326 1428 1442">4. 의안(청원을 포함한다)의 접수 및 처리 현황</li> <li data-bbox="874 1476 1428 1592">5. 의원별 회의출석률, 의안발의, 시정질문 현황</li> <li data-bbox="874 1626 1428 1742">6.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</li> </ol> |

##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

|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|--|
| 관계법령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지방자치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45조(임시회)</li> <li>○ 제4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</li> <li>○ 제65조(회의의 공개 등)</li> <li>○ 제66조(의안의 발의)</li> <li>○ 제71조(회의규칙)</li> </ul> </li> <br/> <li>□ 지방자치법 시행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48조(공개 원칙)</li> </ul> </li> <br/> <li>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11조(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)</li> <li>○ 제14조(의안의 이송 등)</li> </ul> </li> </ul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세부사항 별지 작성”</p> |
| 관련법규<br>정비대상 | “해당사항 없음”  |
| 특이사항         | “해당사항 없음”  |

# 관련법령 발췌사항

## □ 지방자치법

제45조(임시회)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,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8조(의장·부의장의 선거와 임기)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·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·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.

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65조(회의의 공개 등)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66조(의안의 발의)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48조(공개 원칙) 감사나 조사는 공개한다. 다만,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

제11조(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) ① 교육위원회는 당해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의결한다.

1. 조례안
2. 예산안 및 결산
3. 특별부과금·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
4. 기채안(起債案)
5. 기금의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
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
8.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
9. 청원의 수리와 처리
10.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법령과 시·도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
②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시·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.

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의결하기 전에 미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1.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조례안
2.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

[법률 제10046호(2010.2.26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

제14조(의안의 이송 등) 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 중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동시에 시·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회의의장은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이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이를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의안 중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
④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법」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같은 조제3항·제5항 및 제6항 중 "지방자치단체의 장"은 "교육감"으로 본다.

[법률 제10046호(2010.2.26)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]